



-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, 재무회계규칙, 지방자치단체결산지침 등 제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가 잘 되었는지와 결산내용 중 결산의 과오여부, 실제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, 재무관리의 합리성, 예산집행상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최종 심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1999. 12. 1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